

중국(대만)의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 분석*

Analysis of the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s and Legislations in China and Taiwan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중국의 도서관 법제 분석 |
| II. 중국 도서관의 역사와 현황 | 1. 도서관 관련법령의 체계와 내용 |
| III. 중국의 도서관 행정체계 분석 | 2. 도서관법의 발전과정과 분석 |
|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 IV. 요약 및 결론 |
| 2. 도서관의 행정체계 | |

초 록

이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논급되지 않은 중국(대만)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국체는 지방자치에 약간의 민주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2002년말 현재 약 2,69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정부의 문화부(대만은 교육부)가 총괄한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중국은 아직도 국가차원의 도서관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의 운영·관리주체인 성급 지자체도 일부에 한하여 공공도서관의 조례나 관리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주제어 : 중국의 공공도서관, 대만의 공공도서관, 도서관 행정체계, 도서관법제, 도서관법, 도서관기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legislation of China and Taiwan's libraries with priority given to public library. The China is a republic in that the government has some democratic forms, especially at the local level, but it is controll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China the ministry of culture(ministry of education in Taiwan) is the national central body responsible for public libraries. Today in China there are about 2,698 public libraries in total and its governance is a provincial responsibility. For that reason, there does not exist a nation-wide public library act in China.

Key Words : China's Public Libraries, Taiwan's Public Libraries,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 Library Legislation, Library Act, Library Standards.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hy@deagu.ac.kr. <http://biho.daegu.ac.kr/~yhy/>)
접수일자 : 2003. 11.

I. 서론

중국은 夏王朝(B.C. 21C) - 商王朝(殷) - 周 - 春秋全國 - 秦 - 前漢(B.C. 206년 ~ AD 9년) - 新 - 後漢 - 三國 - 魏 - 蜀 - 吳 - 南北朝 - 隋 - 唐 - 元 - 明 - 淸 - 中華民國 - 中華人民共和國 에 이르기까지 4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9년 10월 1일자로 건국된 현재의 중국(PRC :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약 960만 ㎢에 달하는 방대한 국토와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로서 국체는 '인민민주공화제'라는 단일제를 채택하고 있다.

환언하면 중국은 헌법상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권력도 명목상 당과 정부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의 대다수 주요 사안은 당, 특히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가 결정하고 입법 및 행정기능도 수행한다. 그리고 중국의 행정구역은 33개의 省級地方 (22개의 성, 4개의 직할시, 5개의 민족자치구, 2개의 특별 행정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만(중화민국)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78년 이래로 강조해 왔던 '一國兩制'를 대만에 대한 대륙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일국양제'를 실현할 의도로 구사하고 있는, 소위 '兩岸關係'라는 외교정책에서도 대만이라는 국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대만은 '일국양제'에서의 '일국이 중국을 지칭하므로 대만이 중국의 지방정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장구한 역사적 궤적과 찬란한 황하문명을 자랑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서관 인프라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의 도서관사를 개관하고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대만의 도서관 시스템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도서관행정 및 법제의 개편방안을 모색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중국 도서관의 역사와 현황

고대 중국에서는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장소를 '藏書樓'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도서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1900년에 설립된 '杭

1) '양안관계'란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1949년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생성된 정치용어로서, 대륙(Mainland China)과 대만(Taiwan)간 정치, 경제,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관계를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州藏書樓'(현 浙江圖書館의 전신)가 중국 최초의 현대적 공공도서관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일부에서는 '古越藏書樓'를 공공도서관의 시발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적 개념의 도서관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였으며 '도서관'이 공식용어로 사용된 시기는 1905년에 개관한 '湖南圖書館'이라는 주장도 있고, 1904년에 창설된 '湖北圖書館'이라는 설도 있다. 심지어 1897년초 '北京通藝學堂'에 도서관을 설치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한편, 중국의 근대도서관은 청일전쟁(1894~1895) 후에 康有爲가 제창하여 설립된 '公共藏書樓'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1910년에는 도서관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도서관법규인 「京師及各省圖書館通行章程」이 제정되었고 각성에 도서관이 설립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1930년대에는 전국에 약 2,935개의 각종 도서관이 존재하였으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도서관사업의 기본방향을 '프롤레타리아의 정치나 생산에 기여하고, 노동자·농민·병사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성격이 크게 변질되었다.

비록 1957년 9월에 국무원이 「全國圖書調整方案」을 발표하고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도서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 문헌자원의 구축을 통일하였으나 1966년에 시작된 문화 대혁명으로 중단되었다. 다행히도 1980년대에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도서관의 자원공유 정책도 재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대륙의 도서관 발전과정을 '中國大陸圖書館事業與資訊服務報告'는 다음의 4단계로 집약하고 있다.³⁾

① 창설기(1949~1953) : 교육 및 문화부문이 분리된 채 도서관에 대한 법제화 및 건설이 진행되었고, 北京大學·武漢大學·西南師範學院이 전문대학 수준의 도서관학과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② 건설기(1954~1965) : 주관당국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서관 규정을 개정하고 북경과 상해 등지에 전국적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천진을 비롯한 9개의 지구 위원회도 설립되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도서관 협력계획과 더불어 1956년에는 북경 및 무한대학의 도서관학과가 4년제로 개편되었다.

③ 동란기(1966~1975) : 10년간의 문화대혁명 동안 각종 도서관 및 교육기관이 엄

2) 毛慶祚, '臺灣的公共圖書館,' (2001) <<http://www.lins.fju.edu.tw/~mao/pl/twpl.htm>>

3) 比較圖書館資訊學專題研究作業 : 中國大陸圖書館事業與資訊服務報告 <http://www3.nccu.edu.tw/~meilingw/course/graduate/international_lis/classmates_work/china.htm>

청나게 파괴되었고 고통을 받았다. 많은 자료가 산실되었고 도서관도 폐관되었다.

④ 발전기(1976~현재) : 각종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로 문화부, 교육부, 그리고 중국과학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공공도서관, 각급 학교도서관, 과학 및 전문도서관을 설립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건물·설비·직무에서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제3단계인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의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도전과 역할에 직면하였다. 정부와 지도층은 종래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도서관계에 정보자료의 조직, 보존, 배포는 물론 정치·과학·경제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선도하기를 기대하였으며, 실제로 1980년대 초에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비등과 함께 자금과 기술이 대거 투입되었다. 그 결과, 이미 1986년에 20만개가 넘는 각종 도서관이 운영되었으며, 그 가운데 카운티(구) 수준의 공공도서관은 2,300개 이상, 구 이하의 지방에 설립된 문화센터(소규모 도서관과 독서실 포함)는 무려 53,000개에 달하였다.⁴⁾

오늘날 중국은 도서관, 특히 공립도서관을 사회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1995년에 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 제41조는 '성인(또는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규정하였고, 이를 위한 시설의 종류를 명시한 제50조는 '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미술관 및 체육관(장) 등의 사회공공적 문화·체육시설 및 역사문화적 고적과 혁명기념관(지)은 교사·아동·생도·학생을 우대하고 교육을 받는데 유익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공공도서관은 다른 민주국가와 달리, 그 성격의 변질을 포함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1929년에는 현급(縣級)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925개관에 불과하였으나 1978년에 1,218개, 1999년에 2,767개, 2002년에 2,698개관으로 증가함으로써⁵⁾ 전국의 현단위 가운데 86%가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1999년 통계에 의하면 대학도서관은 1,100개, 중규모 이상의 과학연구기관의 도서관은 8,000개가 넘는다.⁶⁾ 2001년말 현재 성급 및 현급 공공도서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4) <http://countrystudies.us/china/82.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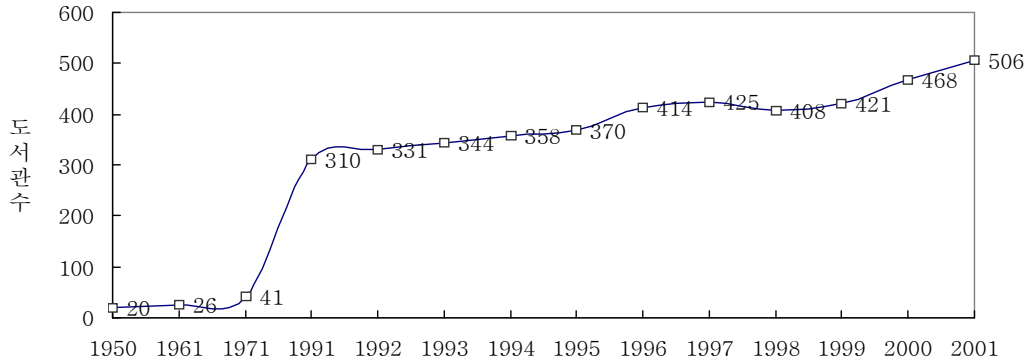
5) <http://www.china.org.cn/english/HIAW/73479.htm> ; 中國圖書館學會, 中國圖書館年鑑(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1), p. 354 ; 吳建中, "中國公共圖書館事業的回顧と展望," <<http://www.library.sh.cn/japanese/watch/list.asp?id=672>>

6) <http://www.china.org.cn/e-china/cultureAndart/librayies.htm>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1
개관당 봉사대상자는 459,000명으로
적정 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인
구 2만명당 1개관을 무색케 하고

<표 1> 중국의 공공도서관 현황(2001년)

구 분	공공도서관		계
	성 급	현 급	
소장책수(만권)	13,167	14,731	42,130
하이 테크책수(만권)	1,550	0,154	17,550



<그림 1> 대만 공공도서관의 연도별 증가추이

있으며, 1인당 소장책수도 IFLA/UNESCO 권장기준인 1.5~2.5권⁷⁾보다 훨씬 낮은 0.28권⁸⁾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李常慶은 최근 중국 도서관계의 문제점을 다음의 5가지로 집약한 바 있다.⁹⁾

- ① 많은 도서관 관리자는 개인의 경험과 관습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운영개념에 머물고 있다.
- ② 많은 도서관이 폐쇄식 관리방식에 의존하는 등 관리의 체제 및 방식이 매우 지체되고 있다.
- ③ 많은 도서관은 이용자를 제한하고 안내 자료서비스에 그칠 뿐,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공동이용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 ④ 새로운 관리수단 및 정보기술의 도입 등이 지연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보와 지식의 유연한 교류 및 전달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7) Philip Gill, et al., *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München : Saur, 2001), p. 56.

8) 吳建中, “中國公共圖書館事業的回顧と展望” (2003, 8) <<http://www.library.sh.cn/japanese/watch/list.asp?id=672>>

9) 李常慶, “中國圖書館界におけるナレッジ-マネジメントの動向,”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No.279(2004. 3. 20), pp. 9-12.

⑤ 도서관 인력구조가 불균형적이다.

반면에 대만의 과거 50년간(1950~2002) 공공도서관 증가추이는 <그림 1> 과 같다.¹⁰⁾ 즉,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50년에는 총 20개관이 존재하였으나, 2001년말 현재 506개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가 하면 國立臺中圖書館이 제공하는 도서관통계는 2001년말 현재 492개관이며, 이들의 주요 현황을 지구별로 세분하면 <표 2> 와 같다.¹¹⁾ 요컨대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는 45,610명 정도, 1인당 소장책수와 대출건수는 각각 0.85권과 1.07건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Ⅲ. 중국의 도서관 행정체계 분석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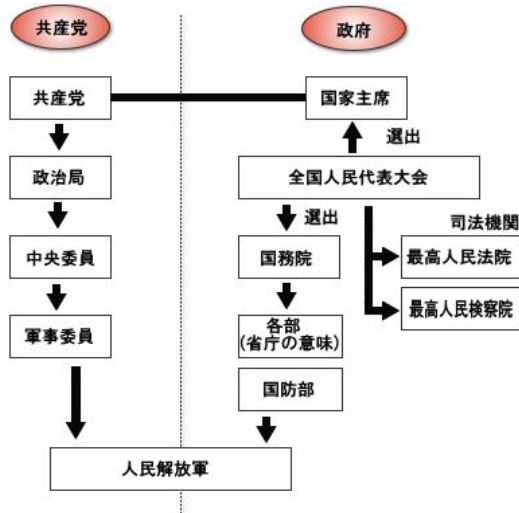
여러 민주국가와는 달리, 중국의 권력구조는 <그림 2>처럼 공산당(Chinese Community Party)과 국무원(행정부)으로 양분되어 있다. 전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이래로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이며 다른 정치조직을 합법화하고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최고 국가행정기관, 즉 중앙인민정부로서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다. 총리, 부총리, 국

<표 2> 대만의 공공도서관 현황(2001년)

지구	인구	도서관수	직원수	소장책수		대출책수	
				소계	1인당	소계	1인당
北部	9,239,429	160	1,001	7,909,118	0.85	11,866,938	1.28
中部	5,654,188	122	691	4,857,088	0.86	4,830,965	0.85
南部	6,323,576	150	614	4,508,006	0.71	6,070,812	0.96
東部	1,063,807	44	120	1,408,118	1.32	1,191,685	1.12
離島	159,435	16	43	393,900	2.47	122,718	0.77
계	22,440,435	492	2,469	19,076,230	0.85	24,083,118	1.07

무위원, 국무원 비서장 및 각부 부장(장관),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장, 심사장으

10) 統計總, 中華民國統計年鑑(臺北 : 全國統計總, 2003), p. 103 ; <http://www.dgbas.gov.tw/dgbas03/bs7/yearbook/4-18&19.xls#a29>



<그림 2>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관계

로 구성되는 국무원은 국가의 내정·외교·재정·경제·문화·교육·위생·공공사업 등의 행정사무를 조직·관리하며, 행정결정과 명령을 반포하고 지방에 산재하는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중국의 지방행정체계는 「헌법」 제 30~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전국을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누고, 성과 자치구는 다시 自治州, 縣, 自治縣, 市로 구분하며, 현과 자치현은 농촌의 최하 행정단위인 鄉·民族鄉과 도시의 말단 행정단위인 鎮으로 나눈다. 그런가 하면 직할시와 비교적 규모가 큰 시는 다

시 區와 縣으로 나누고 있다. 그 외에도 필요할 때는 특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단위 중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 행정구는 동급에 속하며, 국무원의 통제를 받는다. 현은 그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급의 구분이 없으며, 모두 성의 관할 하에 있는 1급 행정구역이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현이 시에 귀속되어 그 통제 하에 있으며, 일부의 현은 자치주의 관할 하에 있다. 성과 현의 중간적 행정지위를 갖고 있는 자치주는 소재지역의 성이나 자치구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설립·취소·명칭과 소속의 변경 등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요컨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행정단위간의 상하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3>¹²⁾과 같이 4계층(성 - 자치주·시·지구 - 구·현·시 - 향·진) 또는 3계층(직할시 - 구·현 - 향·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확정기준에 따른 실제의 지방 행정단위는 대만을 제외하면 33개의 省級地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22개 성¹³⁾을 비롯하여 4개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 중경), 5개 민족자치구(내몽고, 광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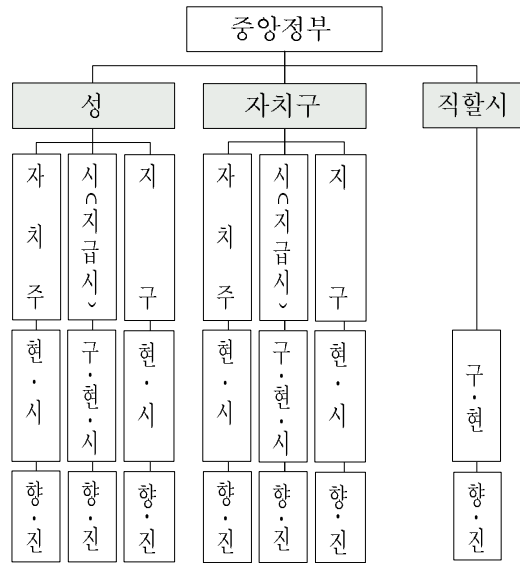
11) <http://www.ptl.edu.tw/publib/main.htm>

12) http://www.korealocal.org.cn/user/index.php?menu_id=14&main_content_type=NEWS

13) 허북구의 허북성·산시성, 서북구의 섬서성·감숙성·칭해성, 동북구의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화둥구의 강소성·절강성·안휘성·강서성·복건성·산둥성, 중남구의 하남

족, 티벳, 寧夏回族, 신장) 및 2개 특별 행정구(홍콩, 마카오)가 있다. 그 하위단 위로는 331개의 地級地方, 2,126개의 縣 級地方, 45,462개의 鄉級地方이 있다.¹⁴⁾

반면에 대만의 중앙행정은 총괄기구 인 행정원 아래에 총 8部(내정, 외교, 국방, 재정, 교육, 법무, 경제, 교통), 1處(主計), 2局(신문, 인사행정), 3署(위생, 환경보호, 해안순방), 20위원회¹⁵⁾, 중앙 은행, 고궁박물관 및 기타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그리고 「地方制度法」에 따라 4계층(中央 - 省(대만성, 복건 성)·직할시(대북시, 고웅시) - 縣·市 - 鄉·鎮)의 행정단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지방행정단위의 수는 총 369개(향 226, 진 61, 시 32, 구 50)에 이르고 있다.¹⁷⁾



<그림 3> 중국의 지방행정단위와 계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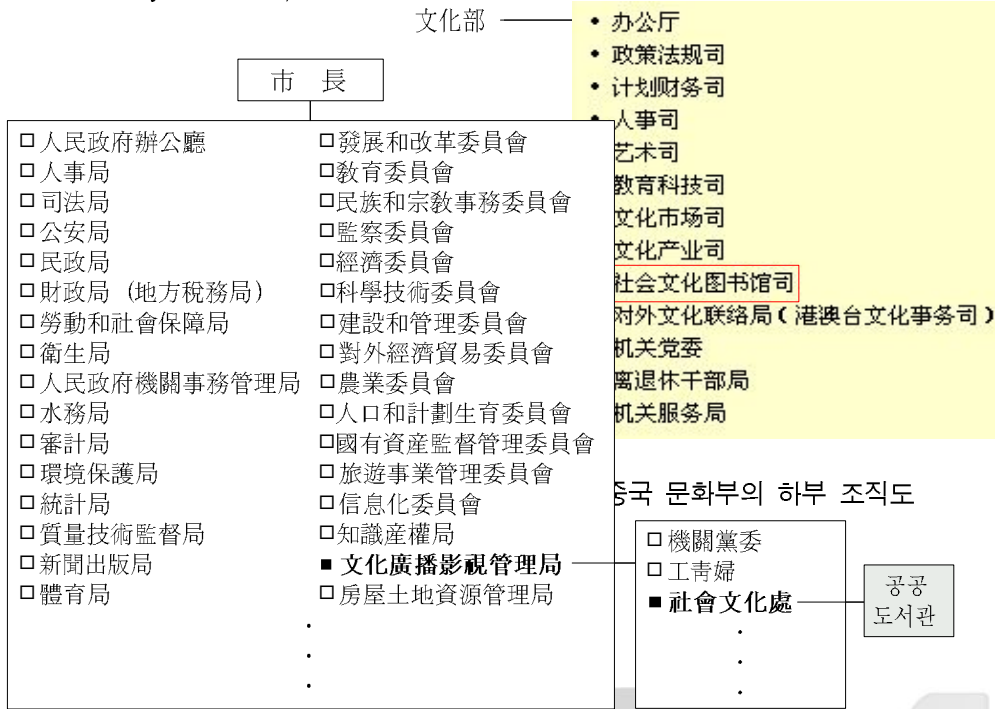
2. 도서관의 행정체계

중국의 도서관 행정체계는 상술한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도서관 주관기관은 <그림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문화부 산하의 13개 하부조직 중에서 '社會文化圖書館司'으로서 국가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관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학 및 학교도서관은 교육부, 특수 도서관은 지역의 적절한 기관이 주관할 정도로 중국의 도서관 관할청은 다양하다.

1909년 9월 9일 宣統皇帝가 건립한 '京師圖書館'의 후신인 현재의 중국국가도서관

성·호북성·호남성·광둥성·해남성, 서남구의 사천성·운남성·귀주성
 14) http://www.clair.or.jp/j/forum/forum/sp_jimu/128_2/INDEX.HTM#1
 15) 20개 위원회는 蒙藏, 僑務, 대륙, 경제건설, 청년보도, 국가과학, 研究發展考核, 농업, 문화건설, 勞工, 公共工程, 原住民族, 체육, 客家, 原子能, 중앙선거, 公평교역, 소비자보호, 飛航安全, 國軍退除疫官兵輔導 등이다.
 16) <http://www.ey.gov.tw/>
 17) 內政府 民政司, "我國地方制度概況," (2002. 12) <http://www.moi.gov.tw/div1/local/local_1.asp>

(National Library of China) 은 문



<그림 6> 상해시 도서관 행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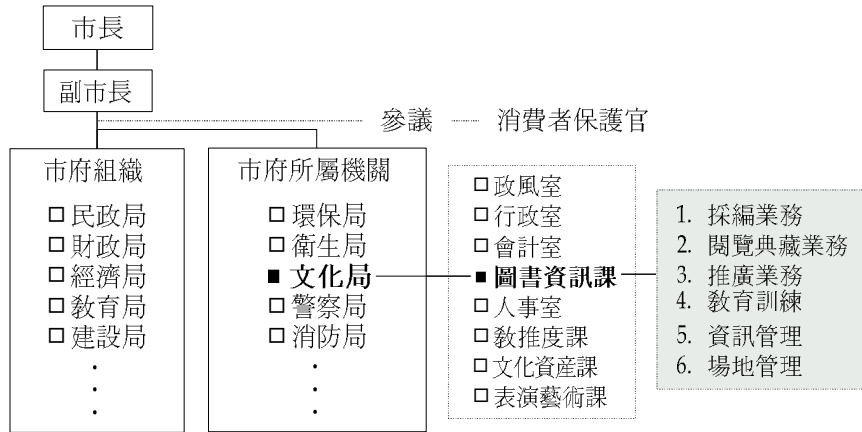
화부 산하의 32개 직속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유형은 성·직할시·자치현이 운영하는 도서관, 시·구·현이 운영하는 도서관, 타운 및 타운십의 가도(街道)도서관, 거민(居民)위원회 도서실, 인민공사의 도서관·도서실, 공회(工會)도서관·공인문화궁(工人文化宮) 도서실, 인민문화궁 도서실·소년문화궁 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급 지자체가 유지·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의 '문화궁' 내지 관련부서의 소관이며, 거민위원회 도서실은 주민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유료 시설이다. 이를 제외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도 대개 문화궁이 도서관 사무를 관할한다. 예컨대 중국 제2의 도시이며 경제특구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해시의 행정체계를 도시한 <그림 5>를 보면 시장 산하에 32국, 9실, 1센터, 13위원회로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그 중에서 도서관 관련사무는 '文化廣播影視管理局'¹⁹⁾ 아래의 15개 하부

18) <http://61.129.65.26:82/gate/big5/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9/no>

조직 중에서 '社會文化處'가 주관하고 있다.

한편 대만에는 문화행정을 총괄하는 문화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중앙



<그림 8> 臺中市的圖書館行政體系

부처에 상당하는 '文化建設委員會'가 1981년 11월부터 최고 행정기구인 행정원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 직속기관 중의 하나가 국가대표도서관인 國立臺中圖書館이며, 하부조직인 第2處가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²⁰⁾, 10가지의 주요 업무(문화건설의 기본방침 및 주요 정책의 연구, 문화건설의 종합계획 및 추진, 문화건설 방안 및 유관시정계획의 심의와 집행의 협조·연락·심사, 문화건설 인재육성 및 장려의 계획 및 추진 문화교류 및 합작계획·심의추진·심사, 문화자산의 보존 문예 및 문화의 보급과 발전계획의 수립·집행·심사, 지역의 총체적 문화건설 및 생활문화의 계획 및 추진 중요 문화활동의 계획 및 추진, 문화건설 자료의 수집·정리·연구, 기타 문화건설 관련업무 및 행정원 위탁업무)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문화건설위원회는 최고 문화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²¹⁾, 공공도서관의 관할

de2405/index.html ; <http://61.129.65.26:82/gate/big5/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9/node2405/node3637/index.html>

19) '文化廣播影視管理局'의 9가지 주요 책무 가운데 4번째가 '시 전역의 문화예술활동 및 예술관, 문화관, 공공도서관 사업 및 사회문화사단 등을 지도·발전'이다.

20) <http://www.cca.gov.tw/intro/leader/jj01-3-2.htm>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요 외국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서울 : 동연구원, 2003), p. 135.

21) 文化建設委員會, 2004 文化白皮書(臺北 同委員會, 2004), p. 29.

IV. 중국의 도서관 법제 분석

1. 도서관 관련법령의 체계와 내용

중국의 법률은 하왕조(B.C. 21C~B.C. 16C)에서 청조 말기(19C)까지의 전통법과 그 이후의 개혁과정에서 탄생한 현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⁶⁾ 현행 헌법의 골격은 등 소평이 개혁과 개방을 시작한 1982년에 마련된 것이며, 그 동안 3차례(1988년, 1993년, 1999년)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중국의 헌법에서 자치법규 및 규칙에 이르는 일반적인 법령체계는 <그림 8>과 같다.²⁷⁾ 그러나 중국은 ‘一元多重立法體制’를 실시하고 각 부문(국무원 각부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회계감사서 및 행정관리 직권을 보유한 직속기관 등)이 서로 다른 수준의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법권은 권력의 확대, 개인 및 소속단체의 이익 등을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각 부문이 경쟁적으로 입법함에 따라 그 명칭 및 분류도 매우 복잡하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법규를 가지고 있다. 국가차원의 법령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서 제정하는 법률, 국무원이 공포하는 행정규정, 국무원에 소속된 단위기관들이 공포하는 통지·결정·심사비준 등이 있다. 그러나 각종 법령이 그 단계나 발표기관의 계위에 따라 구별되지 않을 뿐더러 법제의 단계, 해석권한 및 적용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심지어 동급의 규범적 법률간에 효력이 상충될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판결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한다.²⁸⁾ 최근에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함에 따라 법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개정되는 법률은 「關於修改~法的決定」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首席令으로 공포되고 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개정된 법률의 전문이 공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5) 林文睿, “從法制面向論公共圖書館組織趨勢與因應之道,” 國立中央圖書館臺灣分館館刊, 第六卷 第四期(2000, 6), pp. 1-17.

26) <http://nippon.zaidan.info/seikabutsu/2001/00104/contents/00003.htm>

27) 張輝, “立法法的意義と課題：中國の國會に寄せて,” <<http://www006.upp.so-net.ne.jp/TTS/link4.1.3.htm>>

28) 蔡 憲明, “中國法體系並びに中國知的財産法の中國法體系における地位,” *パテント*, Vol.56, No.3(2003), p. 59.

<표 3> 중국 법령위 유형과 구성

유형	주체	명칭	근거법	비고
헌법	국가	憲法		법고법률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특별규정(法律)	헌법 제58, 62조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기본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중자치조례 등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대한 제정 및 개정
행정법규	국무원	특별규정 條例 規程 規定 命令 令	행정규칙 제정수속 감시행방 조례	국가수준의 행정법규. 국무원 외의 국가기관 의 행정명령은 「~規則」, 「~規則」으로 제정 법규·경위가 「~規定」, 「~辦法」이라 는 명칭도 사용됨
행정문건	행정기관	일반규정 通知, 請示, 指示, 批復, 回答, 書簡	국가행정 기관문건 처리방법 <관할문>	구규정 중국의 법령체계

한편, 중국과 대만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제정·적용하고 있는 도서관·문화와 관계되는 주요 법령을 발췌하면 <표 4>와 같다.²⁹⁾

2. 도서관법의 발전과정과 분석

19세기말 근대 도서관이 설립된 이후, 중국 도서관계에는 법률의 제정과 실천, 그리고 연구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몇 가지 법령이 마련되었는데, 1909년 중국 최초의 도서관법규인 「京師圖書館及各省圖書館通行章程」이, 1915년 「通俗圖書館規程」이, 그리고 1927년 국민정부대학원의 「圖書館條例」가 제정되었다.

이어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당수의 관계법령이 계속해서 공포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1957년 9월 6일 국무원의 제57차 회의에서 의결·공포된 「國家圖書調整法」(National Book Coordination Act)은 2개(북경과 상해)의 국가도서관 설립, 9개의 지역도서관망 구축, 전국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작성 등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국 도서관 발전의 중요한 법적 기초로 회자되고 있다.³⁰⁾ 1950~1980년대까지 제정

29) <http://www.law-lib.com/law/> ; <http://www.ccnt.gov.cn/law/> ; <http://law.moj.gov.tw/> ; <http://www.nchu.edu.tw/~gilis/8/8-2-3.htm>

30) K.T. Wu, "China, Librar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 edited by Allen Kent and W.Z. Nasri(New York : Marcel Dekker, 1970), pp. 632-633.

<표 4> 중국 및 대만의 도서관 관련 주요 법령

중 국	대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科學技術情報工作條例 · 內蒙古自治區公共圖書館管理條例 · 「圖書館建築設計規範」的通知 · 「普通高等學校圖書館規程(修訂)」的通知 · 北京市公共圖書館條例 · 社會教育法 · 上海市公共圖書館管理辦法 · 深圳經濟特區公共圖書館條例(試行) · 浙江省公共圖書館管理辦法 · 中小圖書館(室)規程 · 中華人民共和國(自治區·市)圖書館工作條例 · 中華人民共和國高等學校圖書館工作條例 · 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 · 中華人民共和國圖書館法(建議草案) · 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 · 中華人民共和國普通高等學校圖書館規程 · 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 出版管理條例 · 河南省公共圖書館管理辦法 · 湖北省公共圖書館條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省市公立圖書館規程(1998년 폐지) · 各省市公立社會教育館規程 · 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 國家圖書館管理出版品國際交換辦法 · 國家圖書館組織條例 · 國立臺中圖書館暫行組織規程 · 國立中央圖書館臺灣分館組織條例 · 國立中正文化中心設置條例 · 國民小學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 國民中學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 臺灣地區公私立公共圖書館輔導辦法 · 圖書館法 · 圖書館專業人員資格認定之條件 · 文化建設基金管理委員會補助辦法 · 文化建設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 文化資產保存法 · 社會教育法 · 著作權法 · 政府出版品管理法 · 台灣地區公私立公共圖書館輔導辦法

된 주요 법령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關於加強與改進公共圖書館工作指示 (文化部, 1955)
- 關於工會圖書館工作規定 (文化部抄發中華全國總工會, 1955)
- 中華人民共和國高等學校圖書館試行條例草案 (高等教育部, 1956)
- 國家圖書調整法 (1957)
- 關於圖書開放問題的清示報告 (1978)
- 關於加強高等學校圖書館資料工作意見 (教育部, 1978)
- 中國科學院圖書情報工作暫行條例(試行草案) (中國科學院, 1978)
- 省·市·自治區圖書館工作條例(草案) (文物事業管理局, 1978)
- 中華人民共和國高等學校圖書館工作條例 (教育部, 1981)
- 省·市·自治區圖書館工作條例 (文化部, 1982)
- 普通高等學校圖書館規程 (教育委員會, 1987)
- 文化事業單位開展有償服務經營活動的暫辦法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아직도 도서관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공공도서관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1980~1997까지 도서관법 제정요구와 관련하여 35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圖書館事業法’, ‘公共圖書館法’, ‘高等學校圖書館法’ 등의 초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 제7조 및 제9조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의 기본법률을 제·개정하며, 산하의 상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법을 제정하려면 입법권을 가진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1997년 高運甲을 비롯한 32명의 대표가 가칭 ‘중화인민공화국도서관법 제정안’을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2001년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郭風蓬을 대표로 하는 34명 명의의 ‘도서관관리법(안)’을 제출하였다.³¹⁾ 이 법안의 취지는 중국이 사회주의 도서관 입법체계를 확립하고 도서관법제를 진일보시키며, 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을 역할을 강화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중국경제 및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서관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동년 4월에는 천진에서 문화부의 社會文化圖書館司 및 政策法規司 주관으로 도서관법을 의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법안을 재검토하였으며, 문화부는 법안을 손질하여 2003년 6월 국무원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차원의 ‘도서관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³²⁾ 이 건의초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표 5>와 같다.³³⁾

한편, 국가차원의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부는 「성(자치구·시)도서관공작조례」를, 교육부는 「중소학교도서관(실)규정」, 「중등특수학교도서관규정」, 「보통고등학교도서관규정」 등을 각각 제정·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저마다 도서관 관련법규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경, 상해, 내몽고자치주, 절강성, 하남성, 호북성, 심수 경제특구 등의 조례나 관리법을 들 수 있는데, 「深圳經濟特區公共圖書館條例」는 1997년 7월 심수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6차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자치구 최초의 도서관조례인 「內蒙古自治區公共圖書館管理條例」는 2000년 제9차 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01년에 제정된 「湖南省公共圖書

31) 歐陽晨紅, “論我圖書館法的體系,” 圖書館, 第6期(2003, 6) <<http://www.library.hn.cn/tsg/20031230/Content/00017494.htm>>

32) 李國新, 日本圖書館法律體系研究(北京 : 北京圖書館出版社, 2000), pp. 1-2 ; <http://www.people.com.cn/BIG5/14576/15057/2167304.html>

33) 簡耀東 編, 中日韓三國圖書館法規選編(臺北 : 文華圖書館管理, 1994), pp. 401-406.

館條例」는 가장 최근의 지자체 도서관법규이다.

<표 5> 중국 「圖書館法(建議草案)」의 목차

章	조	주요 내용
1 總則	1-5	취지(목적) ; 국민의 이용권리, 장서개발 및 제공 ; 장서 및 지식전파를 위한 방침 ; 도서관의 유형 및 상호협력 체제 ; 장서, 건물, 설비의 관리와 법적 책임
2 具體 任務	6 7-8 9 10 11	관중 및 수준별 자료수집, 정리, 보존, 전파를 통한 특색 유지 독자 지향적인 업무수행 ; 도서관 상호협력 출판서목,文摘,題錄, 색인의 작성 도서관학, 목록학, 문헌정보학 연구와 실습 업무 표준화 및 과학적 관리, 현대화를 위한 인제·설비 보충
3 領導 體制	12 13 14	도서관사업의 전국적 일원화, 집중화, 통일화된 관리체제 구축 일원집중화 체제하에 계통별(공공, 고교, 과학연구, 공회, 군사, 공안개조, 위생, 중소학, 소년아동, 성시가도, 농촌) 등의 도서관 사업국으로 구분하고 본 법에 근거한 업무조례의 제정 각급 각류의 도서관사업을 위한 직능기구 및 각 지방의 도서관사업 직능부문, 그리고 자문기구인 도서관협회의 건의 준수 등
4 圖書 館長	15 16 17	국가도서관장 및 지방의 각종 도서관장의 임명 지방과 시급 이상 도서관장의 학술지위와 자격 임용방법 현 및 구급 이하 도서관장 및 부관장의 임명
5 組織 機構	18 19 20	도서관업무관리위원회 지방 및 시급 이상 도서관의 하부조직(辨公室, 採訪部, 分編部, 期刊閱覽部, 流通保管部, 科技情報部) ; 현 및 구급 이상 도서관의 하부조직(採編組, 期刊資料組, 流通保管組) 각급 도서관의 부문별 관리책임
6 人員	21 22 23 24	인력구성(간부, 전문직 인력, 행정인력, 보조인력 등) 정규인력 구분(연구관원, 부연구관원, 관원, 보조관원, 관리원) 전문인력의 구성비율(50% 이상) 정규인력 확보기준 : 성(1급)단위 중점 대학도서관 : 연구원 1명, 부연구원 4명, 관원 20명 ; 지방 및 시급 단위의 대학도서관 : 부연구원 1명, 관원 10명, 현 및 구급 도서관 : 관원 3명 ; 현·구급 이하의 도서관 : 관원 2명
7 圖書館 藏書	25 26 27	공공도서관 장서 확보기준 : 성단위 : 100만 ~150만권(大區의 도서관 : 150 ~250 만권 ; 지방 및 시단위 : 50만 ~100만권 ; 현 및 구단위 : 10~20만권 고교도서관 : 1인당(교사+학생수) 100~150권 자비납본(국가도서관에 도서 3책, 잡지 3종, 신문(합본) 1부)
8 經費	28 29 30	국가도서관 및 전국도서관 사업·건설경비 : GNP의 일정비율 지방의 각급 도서관 : 지역 총수입의 일정 비율 과학연구 및 대학의 도서관 : 교육경비의 5% 내외
9 建設與 設備	31 32	도서관 건물의 건축비 각급 공공도서관 : 인구 500~1,000인당 1좌석 및 서고의 확보 ; 대학도서관 : 구성원의 18~25%에 상당하는 좌석(연구생용 30~40%) ; 과학기술도서관 : 평균 5인당 1개 좌석
10 附則	33	본 법이 공포된 후 다른 법규와 충돌하는 경우 본 법을 따른다.

그 가운데 문화부가 1982년 12월 1일자로 제정·공포한 「省(自治區·市)圖書館工作條例」를 분석하면 총 8장 30조문(1장 : 總則(제1~2조), 2장 : 藏書與目錄(제3~6조), 3장 : 讀者服務工作(제7~13조), 4장 : 研究·輔導與協作(제14~16조), 5장 : 組織

<표 7> 대만 「圖書館法」의 분석

조	주요 내용
1~2	목적 ; 정의
3	주관기구(중앙 - 교육부, 직할시 - 직할시정부, 현(시) - 현(시)정부)
4	유형(설립기구)
5	설립 및 운영기준의 제정(중앙 주관기관)
6	자료조직 및 검색 등의 기술규범의 제정주체
7~9	도서관의 서비스 의무 :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원칙 ; 업무
10	인력(도서관장, 주임 또는 관리원의 전문성)
11	주관기관의 위원회 설립운영
12~13	기능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시스템 구축 ; 상호대차와 교류
14	자료폐기(연간 전장서의 3/100 범위 내에서 처리)
15	납본(국가도서관과 입법원 국회도서관에 각 1부)
16	중앙기관의 도서관 설립을 위한 지원체계
17	정기적인 업무평가와 지원
18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벌금액수 : 정가의 10배)
19	본 법률의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20	시행일(공포일)

機構(제17~21조), 6장 : 工作人員(제22~25조), 7장 : 經費·館舍與設備(제26~28조), 8장 : 附則(제29~3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그리고 1996년 11월 28일자로 상해시 인민정부가 공포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上海市公共圖書館管理辦法」의 주요 목차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³⁵⁾

한편, 대만은 중국과 달리 정부차원의 도서관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은 2001년 1월 17일 總統令 제900009320호로 공포된 「圖書館法」인데,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표 7>과 같다.

다음으로 1940년(중화민국 29년) 10월 16일 公報渝字 제302호로 제정·공포되어

34) <http://search.law.com.cn/search>

35)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3124/node3164/node3167/userobjct6ai593.html> ; <http://www.wcbu.com/dd/html/b14.htm>

<표 6> 「上海市公共圖書館管理辦法」의 목차

장	제목	조문	주요 내용
1	총칙	1~2 3 4 5~6	목적 ; 정의 적용범위 주관부서 : 상해 문화국 및 각 지구의 문화담당 부서 설치원칙 ; 관리원칙
2	설치	7 8 9 10 11~13	설계방안의 승인 관사면적 : 카운티(구)도서관 5천㎡ 이상, 타운도서관 100㎡ 이상 열람석 : 카운티도서관 및 타운도서관의 합은 인구의 2% 이상, 카운티도서관은 500석 이상, 타운도서관 50석 이상 공간배치요건 설치등기 ; 공공도서관 사용변경의 제한 ; 중지 및 변경
3	자료 수집	14 15 16 17 18 19	수장량 : 카운티도서관 50만권 이상, 타운도서관 1만권 이상 중점 수집자료 목록관리 대출·열람기간 자료관리(수선) 출판물의 납본 : 30일내
4	인력 장비 예산	20 21~22 23 24~25	관장의 조건 : 관장 1명, 부관장 약간 명 인력배치 ; 훈련과 감독 특수 목적의 장비 배치 예산보증 ; 자료구입비 사용의 감독
5	독자 봉사 업무	26 27~28 29~30 31~32	개방시간 : 시도서관 70시간 이상, 카운티도서관 63시간 이상, 타운도서관 49시간 이상, 청소년도서관 36시간 이상 대출방식 ; 대출범위 독서지도 ; 정보서비스 독자의무 ; 사용료 규정
6	지원협력	33~34	서비스 지원 ; 서비스 협력
7	포상벌칙	35~36	포상 ; 법규정 위반사의 처리
8	부칙	37 38 39	마을도서관 설립 법률의 적용과 해석 시행시기 : 1997년 1월 1일

1945년에 개정되었으며, 1996년 華總字 제8500023530 호로 재개정·공포된 현행 「國家圖書館組織條例」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표 8>과 같다.³⁶⁾

마지막으로 대만의 교육부는 2002년 10월 8일자로 「公共圖書館運營管理要點」을 폐

36) <http://www.edu.tw/society/Laws/L01/4-1/4-1.html>

지하는 대신에 「公共圖書館設立及運營基準」(教育部令 台社字 第91156118 號)을 제정·공포하였는데, 목차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³⁷⁾ 이 기준은 「도서관법」 제5조에서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기준은 중앙정부의 주관기관이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표 8> 대만 「國家圖書館組織條例」의 목차

조	주요 내용
1	소속(교육부) 및 기능
2	조직(採訪組, 編目組, 閱覽組, 參考組, 特藏組, 資訊組, 輔導組, 研究組, 總務組) 및 조별 사무분장
3~4	관장 및 부관장 ; 주임 및 조별 정원
5~7	人事室 설치 및 업무 ; 會計室 설치 및 업무 ; 政風室 설치 및 업무
8	각 실(제3조-7조)의 직급 및 명칭
9	분관설립
10	출판물의 국제교환
11	국제표준서지, 서목 등
12	자문위원회
13	세칙 규정에 관한 사항
14	시행시기(공표일)

37) <http://www.ncl.edu.tw/bbs/pdf/5-1.pdf>

V. 요약 및 결론

모든 국가는 저마다 상이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도서관의 행정체계와 법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을 대상의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를 분석하였는 바, 그 대강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도서관은 ‘藏書樓’ 등을 기원으로 하며, 20세기 초에 현대적 개념의 공공도서관이 등장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01년말 현재의 주요 지표(도서관수 2,698개, 1개관당 봉사대상자 459,000명, 1인당 소장책수 0.28권, 1인당 대출건수 0.13건)가 반증하듯이 매우 열악하다. 반면에 약 50년의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주요 지표(도서관수 506개관,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 45,610명, 1인당 소장책수 0.85권, 1인당 대출건수)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 중국의 도서관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다양하다. 공공도서관은 문화부의 ‘社會文化圖書館司’, 대학 및 학교도서관은 교육부, 특수도서관은 지역의 적절한 기관이 주관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공도서관은 대개 ‘문화국’ 관할 하에 있다.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행정원의 문화건설위원회가 최고 문화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는 교육부의 ‘社會教育司’가 주관하며, 지자체의 공공도서관도 대체로 시정부의 ‘교육국’ 관할 하에 있다. 다만 현립 및 시립도서관은 당해 현과 시의 문화중심(센터) 또는 문화국, 향(진, 시)립 도서관은 ‘민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중국은 ‘一元多重立法體制’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원을 비롯한 각 부문이 서로 다른 수준의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법 입법권은 「中華人民共和國立

<표 9> 대만 「公共圖書館設立及運營基準」의 목차

장	조	목차 및 주요 내용
1 총칙	(1)	기준의 근거규정(도서관법 제5조)
	(2)	공공도서관의 분류(유형)
	(3)	공공도서관의 복무대상
2 설립	(4)	설립목적
3 조직 인원	(5)	공립공공도서관의 인력배치를 위한 산출기준
	(6)	분관, 민중열람실, 도서 순회차의 운영·관리
	(7)	자문위원회 구성
	(9)	내부규정 및 스텝 매뉴얼 준비
	(10)	직원의 유형과 구분 : 전문직원, 행정직원, 기술직원
	(11)	전문직원의 비율(전체직원의 1/3 이상) ; 관장 자격요건
	(12)	직원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연간 6시간 이상)
(13)	자료구입비(도서관의 연간 경상지출비 총액의 15% 이상)	
4 장서 개발	(14)	자료선택 및 수집의 원칙, 균형집서 등
	(15)	수집범위(모든 자료유형의 포괄)
	(16)	연간 수집량(1인당 1책 기준)과 연차증가량(국립, 직할시립, 현시 등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설정)
	(17)	잡지 확보기준(국립 및 직할시립 : 1천종 이상, 현시 : 300종 이상, 향진 : 30종 이상)
	(18)	장서개발시 성인, 청소년, 아동, 특수 독자의 수요 반영
	(19)	적정량의 신문 확보
(20)	연간 폐기기준(3/100)	
5 관사 설비	(21)-(23)	공간 ; 건축계획(공동참여) ; 건물 및 설비
	(24)	면적기준 : 국립도서관 2만㎡(분관은 3,000㎡) ; 직할시립도서관 2만㎡(분관 1,800㎡) ; 현시도서관의 경우 인구 50 만 미만은 3,000㎡ 50 만~100만은 4,000㎡, 100만 이상은 5,000㎡ ; 향진도서관 700㎡
	(25)-(26)	독자업무를 위한 공간배치 ; 각종 가구와 정보기기의 배치
6 운영 관리	(27)	독자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와 활동
	(28)	개관기준(주 44시간 이상, 주 6일, 주일 및 야간 개방)
	(29)-(31)	자료실 운영(개가제 원칙) ; 무료대출 원칙 ; 도서관 상호대차
	(32)	도서관 및 자료이용을 위한 상시적 홍보활동
	(33)	장서목록의 작성
	(34)	중앙관에서 분관의 자료수집, 등록, 조직 등을 수행
	(35)	도서관 제반활동에 대한 통계의 작성과 제출
	(36)	자동화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품질관리
	(37)-(38)	사회와의 연대 강화 ;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대
(39)	자기점검(평가)	
7 부칙	(40)	기준의 용도(지도 및 평가의 근거)

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나 산하의 상무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다. 1909년에 중국 최초로 「京師圖書館及各省圖書館通行章程」이 제정된 이래로 다

양한 규정, 관리법, 조례 등이 제정·운동되어 왔으나, 아직도 국가차원의 「도서관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부는 「성(자치구·시) 도서관공작조례」를, 교육부는 「中小學校圖書館(室)規程」, 「中等特殊學敎圖書館規程」, 「普通高等學校圖書館規程」 등을 각각 제정·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성급 지자체인 북경, 상해, 내몽고자치주, 절강성, 하남성, 호북성 심수 경제특구 등도 도서관 관련법규를 제정·운동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은 2001년에 「도서관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40년에 제정된 「國家圖書館組織條例」도 1996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중국에는 공공도서관 기준이 없으나 대만은 「도서관법」 제5조에 근거하여 「公共圖書館設立及運營基準」이 제정되었다. 이 기준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장기준에 불과한 「한국도서관기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